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보호자에 대한 자녀 정치 교육 의무 부과 등 〉
■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71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보호자에 대한 자녀 정치 교육 의무 부과 등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민전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9. 8.
3. 회 부 일 : 2025. 9.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인터넷 매체와 사설 교육기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등 미성년 학생을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활동에 동원하거나 참여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이에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특정한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보호자에 대한 자녀 정치 교육 의무 부과 등

-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하여 자녀 또는 아동이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사안에 대해 스스로 사고·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특정한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위한 활동에 부당하게 이용·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보호자) ① ~ ③ (생략) <신설>	제13조(보호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u>자녀 또는 아동이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하며, 특정한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위한 활동에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치와 관련하여 제6조(교육의 중립성)제1항 교육이 정치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제14조(교원) 교원은 특정 정당·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음.¹⁾

또한 보호자와 관련하여 제13조제1항(보호자)에서 보호자가 자녀 또는 아동에 대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것,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이를 존중하는 것, 교원과 학교의 학생 교육·지도에 협조·존중할 것 등을 규정함.²⁾

□ 이에 더하여 개정안은 제13조(보호자)에서 정치적 사안 등에 대한

1) 「교육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교원) ⑤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보호자의 교육 및 보호 의무를 규정함.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미성년 학생이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활동에 동원되는 경우 건강한 성장과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자에게 자녀 또는 아동이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사안에 대해 스스로 사고·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특정한 정치적·이념적 목적을 위한 활동에 부당하게 이용·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개정안에 따를 경우, 보호자의 교육과 보호를 통해 자녀 등이 정치적 편견을 가지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활동에 부당하게 이용되는 상황 등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에서 보호자는 ‘제2장 교육당사자’에서 자녀 등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등 기본사항을 교육하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으며,³⁾ 사안별·분야별 교육은 ‘제3장 교육의 진흥’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됨.⁴⁾

3)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4) 「교육기본법」 ‘제3장 교육의 진흥’에 포함된 조항 예시

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7(평화적 통일 지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개정안에 규정된 교육은 ‘자녀 등이 사회적·정치적 사안에 대해 스스로 사고·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회·정치 관련 교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이 현행법령 체계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해당 교육을 보호자가 수행하도록 할 경우에도, 보호자가 자녀 등에게 사회·정치 관련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관련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과학·기술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개정안의 ‘부모 등 보호자의 사회적·정치적 사안에 대한 자녀 교육·보호 의무’는 헌법 제37조제1항, 제36조, 제10조 등을 통해 인정되는 중요한 기본권인 부모의 자녀 교육권에 포함되므로, 이를 법률로 기속 시 부모의 자녀교육권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될 소지가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함. * 2000.4.27.선고,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3조등 위헌확인 - 또한,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 범위*를 특정할 수 없고, ‘특정 정치·이념’과 ‘부당한 이용·동원’ 등은 추상적이므로, 법 적용과정에서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큼. 그 결과,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위축 및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성년(민법, 19세) △아동(아동복지법, 18세미만) △선거권(공직선거법, 18세이상) △아동·청소년(청소년성보호법, 19세미만) △청소년(청소년기본법, 24세이하) 등 - 아울러, 개정안의 보호자 의무는 그 이행 여부 및 불이행 판단 기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성격을 지님. 따라서, 보호자에게 자녀를 정치적·이념적 활동으로부터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기속규정을 신설하더라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중검토 - ‘특정 정치적 이념적 목적을 위한 활동에의 부당한 이용’이라는 개념이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과 과잉규제로 이어져 아동의 시민적 권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경기도교육청 소재 6개교: 신중검토 - 부모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권리는 「헌법」 제10조, 제31조, 제36조 등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권의 영역으로, 「교육기본법」에 가정 내 부모의 교육적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행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통해 개정안의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개정안의 내용이 부모 및 학생의 사회적, 정치적 사고 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교육 현장에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89